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권영세·조경태·이인선

강대식 • 주호영 • 김정재

곽규택 · 안철수 · 서일준

강승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의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주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수인하기 힘든수준의 소음이 빈발하고 있어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평온과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 국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 화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 화하고자 함(안 제14조, 제22조, 제24조 및 별표).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별표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소음측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및 별표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야간	심야
			(07:00~해지기	(해진 후~	(00:00~
			전)	24:00)	07:00)
대상 소음도		주거지역, 학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등가소음도	종합병원	00 2126	20 2121	45 9 9
	(Leq)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주거지역, 학교,	90 시원	70 이런	CE 61 =1
	최고소음도	종합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Lmax)	공공도서관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비고

-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 2.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나. 공공도서관
- 3.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2회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나. 공공도서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	
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	
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u>	<u>별표의</u>
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	
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소음측
	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 ①・② (생 략)	제22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슬)
<u><신 설></u>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
	부・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
	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u>③</u> · <u>④</u> (생 략)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 <u>5.</u> (생 략)

제24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u>4.</u> (현행 제5호와 같음)